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9일, 한지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한지아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
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정

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현행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한 입법례로서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를 들 수 있음.

다만, 안 제12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의 종류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2항과 같이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 및 제출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